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포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취업규칙 제9장 제4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구분)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로상
가. 산학협력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나. 산학협력단에서 10년, 20년, 30년, 근속한 자로서 산학협력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 되는 자
2. 모범상: 산학협력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우수 직원상: 산학협력단 업무 성과가 우수한 자
4. 퇴직공로상: 산학협력단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명예)퇴직하는 자

제3조(포상 방법 및 부상) 포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로상, 모범상, 우수 직원상 대상자에게 산학협력단장 명의의 표창패(또는 표창장)와 별도의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한다.
2. 공로상 대상자에게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3. 퇴직공로상 대상자에게 순금 56.25g을 부상으로 수여하되, 근무성적 또는 업적이 뛰어난 직원에게 별도의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4. 포상을 수상한 자는 특별히 공적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간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포상자 추천) 각종 포상대상자는 소속 실장 또는 산학협력총괄실장이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서는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포상의 시기) 정기포상은 산학협력단 창립일 또는 하계 세미나 시 수여하고, 수시 포상은 필요시에 수여한다. 다만, 퇴직공로상은 정년(명예)퇴직 시에 수여한다.

제6조(공적심사) 포상은 추천서와 공적조서 등에 의해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포상업무) 포상업무는 산학협력총괄실에서 담당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